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2
------	-----

제출년월일 : 2002. 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계층이 참여를 희망하고 활동범위도 다양해져 가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역사회개발·사회복지·주민보건·환경보전·기초질서제도·재난관리·문화예술·관광·체육·교육 및 청소년 선도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이내의 평창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기능·운영 또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지원, 자원봉사주간운영, 자원봉사보험가입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수정조례안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p> <p>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p> <p>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5. 보조금지급대상 단체 심의선정 (신설)</p>
<p>③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당연직(부군수, 군의원, 자치행정과장, 환경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소장)위원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무과장이 된다.</p>
<p>제12조(보조금지원)</p>	<p>제12조(보조금지원) 다음 제2항 및 각호 신설</p> <p>②지원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2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원 안	수 정 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u>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u>군수에게 제출하고 평창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선정한다.</u></p>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관광·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군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군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업
4.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5. 보조금의 지급대상 단체심의선정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당연직(부군수, 군의원, 자치행정과장, 환경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소장)위원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무과장이 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설치 또는 자원봉사센터)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사항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센터의 운영 등) ①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센터의 운영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 장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 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관리를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 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4. 센터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2조(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2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평창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 선정한다.

제13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주간)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인정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 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상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문 : 별첨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도지사

가/2

진 12

2001년 7월 14일

강원도조례 제2862호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하고 지원·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관광·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도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사항
4.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5.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내 각급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을 위한 종합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단체·학교·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센터의 운영 등) ①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단위 자원봉사단체연합회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도내 행정구역을 주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제11조(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①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도지사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한다.

-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원봉사주간) ①도지사는 도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 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경력 인정 등) 도지사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